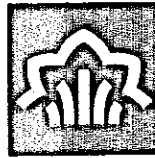


1996년 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부천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범관

위원 이원재

위원 문탁인

위원 황인근

위원 정길영

1.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총괄설명】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총괄결산은

- 세입예산액 525,762,4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7,454,892,17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46,761,670,410원(전년도 이월금 120,999,182,4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98,049,710,036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79,405,182,1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79,405,182,14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5,558,097,820원
 - 사고이월 23,936,060,436원
 - 계속바이월 87,158,667,9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617,886,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34,469,614
원이다.

2. 1996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288,602,3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0,547,775,62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84,841,263,000원(전년도 이월금 96,238,938,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41,029,730,795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49,518,044,8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49,518,044,83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16,247,133,390원
- 사고이월 7,013,441,830원
- 계속비이월 81,636,601,7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94,32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226,540,910원이다.

3. 19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 세입예산액 237,160,16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907,116,551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61,920,407,410원(전년도 이월금 24,760,244,4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019,979,241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9,887,137,3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29,887,137,31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29,310,964,430원
 - 사고이월 16,922,618,606원
 - 계속비이월 5,522,066,20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23,559,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907,928,704원이다.

4. 19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가. 총괄결산은

- 세입예산액 29,948,50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873,421,85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1,777,004,150원(전년도 이월금 1,828,495,15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51,672,59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24,221,749,2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

을 공제한 24,221,749,26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6,979,707,320원
- 사고이월 116,545,54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3,705,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01,790,430원이다.

나.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1,368,63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9,897,77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504,817,500원(전년도 이월금 136,185,5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299,615,9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10,281,81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410,281,817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0,281,817원이다.

2)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9,3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906,47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9,3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045,32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4,861,1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4,861,15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861,150원이다.

3)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77,26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687,90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77,265,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000,00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156,687,90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56,687,904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687,904원이다.

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466,14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39,429,18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466,143,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415,723,210원이며,

○ 그 차입잔액은 23,705,9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3,705,97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3,705,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059,65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81,898,12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563,012,650원(전년도 이월금 503,358,65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83,885,15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8,198,012,97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8,198,012,979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5,372,897,00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5,115,979원이다.

6)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582,65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1,251,19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82,65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20,522,680원 이며,

○ 그 차인잔액은 300,728,51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00,728,512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728,512원이다.

7) 교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6,042,18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02,873,30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231,136,000원(전년도 이월금 1,188,951,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496,682,83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206,190,47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4,206,190,479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0원
 - 사고이월 116,545,54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89,644,939원이다.

8)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202,67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92,477,88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202,679,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7,4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891,280,44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7,891,280,449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사이월 1,606,810,320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3개 공기업특별회계 외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 월 액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공영개발특별회계	142,256,714,460	145,670,118,332	97,934,117,600	47,736,000,732	17,510,399,990	13,517,914,204		16,707,686,538
상수도특별회계	36,577,041,800	78,628,145,949	25,019,817,531	53,608,328,418	3,870,857,120	130,890,442	5,522,066,200	44,084,514,656
하수도특별회계	51,309,647,000	27,735,430,420	23,414,371,520	4,321,058,900	950,000,000	3,157,268,420		213,790,480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㉑	결 산					이 월 액 명 세 서					
			세 입 ㉒	㉒/㉑	세 출 ㉓	㉓/㉑	이월액 ㉔	㉔/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46,761,670	677,454,892		398,049,710		279,405,182		45,558,097	23,936,060	87,158,668	617,886	122,134,471
일 반 회 계	계	384,841,263	390,547,776		241,029,731		149,518,045		16,247,133	7,013,442	81,636,602	394,327	44,226,541
특 별 회 계	계	261,920,407	286,907,116		157,019,979		129,887,137		29,310,964	16,922,618	5,522,066	223,559	77,907,930
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230,143,403	252,033,694		146,368,306		105,665,388		22,331,257	16,806,073	5,522,066	199,853	60,806,139
	상 수 도 사 업	36,577,042	78,628,146		25,019,817		53,608,329		3,870,857	130,890	5,522,066		44,084,516
	공 영 개 발 사 업	142,256,714	145,670,118		97,934,118		47,736,000		17,510,400	13,517,914		199,022	16,508,664
	하 수 도 사 업	51,309,647	27,735,430		23,414,371		4,321,059		950,000	3,157,269		831	212,959
기타 특별회계	소 계	31,777,004	34,873,422		10,651,673		24,221,749		6,979,707	116,545		23,706	17,101,791
	하 수 도 사 업	1,504,817	4,709,898		1,299,616		3,410,282						3,410,282
	주 택 사 업	49,300	43,907		9,045		34,862						34,862
	의료보험기금사업	3,466,143	3,439,429		3,415,723		23,706					23,706	0
	새마을소득사업	177,265	281,688		125,000		156,688						156,688
	토지구획정리사업	9,563,013	9,181,898		983,885		8,198,013		5,372,897				2,825,116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사업	582,651	621,251		320,523		300,728						300,728
	교 통 사 업	7,231,136	8,702,873		4,496,683		4,206,190			116,545			4,089,645
	경 영 수 익 사 업	9,202,679	7,892,478		1,198		7,891,280		1,606,810				6,284,470

전년도 결산대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㉓	세 입			세 출			이 월 액 명 세 서					
		결산액 ㉔	증 감	㉕/㉖	결산액 ㉗	증 감	㉘/㉙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당해년도	646,761,670	677,454,892	30,693,222	398,049,710	△248,441,960		279,405,182	45,558,097	23,936,060	87,158,668	617,886	122,134,471
	전 년 도	635,474,593	634,989,815	△484,778	406,493,094	△228,981,499		228,496,721	23,378,206	17,751,084	62,464,408	780,860	124,122,163
	증 감	11,287,077	42,465,077	31,178,000	8,443,384	19,460,461		50,908,461	22,179,891	6,184,976	24,694,260	△162,974	△1,987,692
일 반 회 계	당해년도	384,841,263	390,547,776	5,706,513	241,029,731	△143,811,532		149,518,045	16,247,133	7,013,442	81,636,602	394,327	44,226,541
	전 년 도	382,687,312	360,697,161	△21,990,151	242,710,061	△139,977,251		117,987,100	18,278,206	15,751,288	61,038,353	770,284	22,148,969
	증 감	2,153,951	29,850,615	27,696,664	△1,680,330	△3,834,281		31,530,945	△2,031,073	△8,737,846	20,598,249	△375,957	22,077,57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당해년도	230,143,403	252,033,694	21,890,291	146,368,306	△83,505,097		105,665,388	22,331,257	16,806,073	5,522,066	199,853	60,806,139
	전 년 도	207,948,364	247,040,236	39,091,872	149,456,862	△58,491,502		97,583,374	5,100,000	171,301	1,426,055		90,886,018
	증 감	22,195,039	4,993,458	△17,201,581	△3,088,556	△25,013,595		8,082,014	17,231,257	16,634,772	4,096,011	199,853	△30,079,879
기 타 특 별 회 계	당해년도	31,777,004	34,873,422	3,096,418	10,651,673	△21,122,331		24,221,749	6,979,707	116,545		23,706	17,101,791
	전 년 도	44,838,917	27,252,418	△17,586,499	14,326,171	△30,512,746		12,926,247		1,828,495		10,576	11,087,176
	증 감	△13,061,913	11,621,004	20,682,917	△3,674,490	9,390,415		11,295,502	6,979,707	△1,711,950		13,130	△6,014,615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재원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㉑	결 산 액 ㉒	증 감 ㉑-㉒	예산현액 ㉓	결 산 액 ㉔	증 감 ㉓-㉔	예산현액 ㉕	결 산 액 ㉖	증 감 ㉕-㉖
계	318,550,834	425,421,193	△105,870,359	288,602,325	390,547,775	△101,945,450	29,948,509	34,873,418	△4,924,909
지 방 세	130,207,000	127,193,124	3,013,876	130,207,000	127,193,124	3,013,876	0	0	0
세 의 수 입	156,660,507	266,350,779	△109,690,272	130,135,610	234,870,973	△104,735,363	26,524,897	31,479,806	△4,954,909
경상적세의수입	92,658,690	112,747,505	△20,088,815	85,581,938	103,066,475	△17,484,536	7,076,752	9,681,030	△2,604,278
임시적세의수입	64,001,817	153,603,274	△89,601,457	44,553,672	131,804,498	△87,250,826	19,448,145	21,798,776	△2,350,631
지 방 교 부 세	1,6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0	0	0	0
증 액 교 부 금									
지 방 양 여 금	5,789,300	5,670,879	118,421	5,789,300	5,670,879	118,421	0	0	0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21,719,027	21,831,411	△112,384	18,295,415	18,437,799	△142,384	3,423,612	3,393,612	30,000
국 고 보 조 금	10,927,992	10,534,694	393,298	8,244,786	7,851,488	393,298	2,683,206	2,683,206	0
시·도비보조금	10,791,035	11,296,717	△505,682	10,050,629	10,586,311	△535,682	740,406	710,406	30,000
지 방 채	2,575,000		△200,000	2,575,000	2,775,000	△200,000	0	0	0
계	416,618,261	251,681,403	164,936,858	384,841,259	241,029,730	143,811,529	31,777,002	10,651,673	21,125,329
인 건 비	47,068,556	43,981,946	3,086,610	46,756,001	43,700,020	3,055,981	312,555	281,926	30,629
물 건 비	47,525,632	39,428,780	8,096,852	42,659,732	35,201,781	7,457,951	4,865,900	4,226,999	638,901
이 전 경 비	50,768,598	47,091,344	3,677,254	50,365,997	46,795,016	3,570,981	402,601	296,328	106,273
자 본 지 출	237,039,192	100,177,171	136,862,021	222,777,798	94,865,655	127,912,143	14,261,394	5,311,516	8,949,878
용 자 및 출 자	2,759,265	2,445,523	313,742	2,000,000	2,000,000	0	759,265	445,523	313,742
보 전 재 원	1,579,500	1,570,433	9,067	1,568,200	1,568,200	0	11,300	2,233	9,067
내 부 거 래	22,544,657	14,958,601	7,586,056	14,914,778	14,912,779	1,999	7,629,879	45,822	7,584,057
예 비 비 및 기타	7,332,861	2,207,605	5,305,256	3,798,753	1,986,279	1,812,474	3,534,108	41,326	3,492,782

74 (계55회 - 제1차)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총평

-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욕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예산 작업을 하는 반면, 일년간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담당부서의 고유업무로 착각하여 결산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 세입 세출 집행에 잘못된 점을 발견치 못하여 신년도 예산편성 시 시정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음.
- 각 실·과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의 심도있는 분석결과와 예산집행에 모순 등에 대하여는 신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로 하여야 하며, 96년도 결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계수를 집계하는 형식적인 결산을 한 흔적이 보이는 바 앞으로 결산은 관리자로부터 실무자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하여야 할 것임.

【세입예산 부문】

- 세입예산은 매년 세출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예산도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상 관례이나 96년도 징수결정액이 95년도인 전년도에 비하여 9% 증가한 반면 징수를 결정하고도 수납시키지 못한 이월액 증가율이 37.5%로 증가 되었다 함은 세무행정에 허구성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 96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크게 노출된 부분은 세법에 의한 세금징수에 부진보다는 각종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등에 미징수가 예상 외로 많았음.
- 96년 결산검사에 고무적인 것은 95년도 결산결과로 의회의 이자수입 부분에 개선요구에 부응하여 이자수입이 95년도에 105억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거의 200%에 가까운 197억원으로서 92억원의 수입을 증가시킨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성과로 평가됨.

【세출 부문】

- 96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세출예산 총액은 95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46,761백만원인 바 실제로 지출된 것은 398,049백만원으로 그 차인액이 279,405백만원으로서 이는 당해년도 예산 중 계속이월비 87,158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이월액 불용액 등으로 결산되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됨. 특히 예산 중 전체 불용액이 14.2%로 92,059백만원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1%, 사회개발비는 불용액

이 40.3%, 경제개발비는 35.3%, 교통개발비 30% 등의 비율로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관리자들의 관심이 소홀하였음.

끝으로 부천시의 예산 신장률이 과거보다 세입부분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세입에 주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 등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고 또 경제침체로 세입증가 요인이 없는 실정이라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세출부분에 상당히 알뜰하고도 긴축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세입결산검사 검토사항

1. 일반세입분야

○ 개 요

- 96년도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중이 높음.

구 분		예 산	구 성 비	수 납 액	구 성 비
일 반 회 계	지 방 세	130,207	24.8	127,193	18.8
	세 외 수 입	130,136	24.8	234,871	34.7
	기 타	28,259	5.4	24,484	4.2
	소 계	288,602	55.0	390,548	57.7
특 별 회 계	공영개발공기업	120,751	23.0	145,670	21.5
	상수도공기업	35,151	6.7	78,628	11.6
	하수도공기업	51,310	9.7	27,736	4.1
	기 타	29,948	5.6	34,873	5.1
	소 계	237,160	45.0	286,907	42.3
합	계	525,762	100.0	677,455	100.0

- 연도별 미수납을 비교한 결과 결손처분율은 낮아졌으나, 이월률이 높아졌으며, 징수결정액의 증가율(9%)에 비해서도 이월액의 증가율(37.5%)이 높음.

구 분	94년	95년	96년
정수결정액	3,262	3,763	4,116
수 납 액	3,171	3,607	3,905
정 수 액	97.2%	95.9%	94.9%
미 수 납액	91	156	211
미 수 납율	2.8%	4%	5.1%
결손처분액	2.7	5.1%	2.7%
결손처분률 (결손액/미수납액)	0.08%	0.14%	0.07%
이 월 액	88.3	150.9	207.5
이 월 률 (이월액/정수결정액)	2.7%	4.0	5.0%

- 정수율의 하락추세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수율제고 및 체납액 정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2. 자금운영방법의 개선

○ 개 요

자금의 운용 시 장·단기 자금 및 예금상품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다양함. 따라서, 자금운용시 금리,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문제점

현재 부천시외의 자금잔액은 배원 말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자금운용 방법은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자금지출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단기 고수의 상품에 운용하고 있어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고수익상품(예:채권형 신탁)에의 투자액이 낮아서 추가적인 수익 달성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음.

○ 개선방안

자금의 잔액을 연간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장기자금을 분류한 후 그중 일부를 장기고수의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3. 금고 운영방법의 재 검토

○ 개 요

부천시는 농협중앙회와 시금고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금고의 계약기간은 1999년까지로 되어 있음.

○ 문제점

금융시장의 개방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차이가 나며 서비스의 질, 금융상품의 질이 점차 차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현재 1개소의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금고의 서비스 질의 제고 및 자금운영에 불리할 것(운영가능한 금융상품의 제한 등)으로 예측됨.

○ 개선방안

인천시의 경우 시금고의 공개 입찰방식 선정과 복수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재정키 위한 움직임이 있는 바 부천시 금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인 1999년까지는 구체적인 조례 및 운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시금고관리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임.

4. 개발부담금 부과 소홀

○ 개 요

대한주택공사의 부천소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 12. 31. 준공되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해당액은 2,127백만원으로 96년 및 97년에 걸쳐 모두 부과되었음.

○ 문제점

개발부담금 부과해당액은 2,127백만원이나 관계자의 업무미숙 및 부과자료 검토소홀 등으로 96. 3. 29.의 1차부과액은 896백만원만 부과되었다가 이후 시정되어 97. 5. 12. 나머지 금액인 1,231백만원이 부과되어 착오부과되었던 금액의 세입지연으로 상당한 이자 손실이 발생하였음.

○ 개선방안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자는 해당법률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건설회사 등과 관련된 주요 개발부담금 부과 해당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거액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과소부과 및 세입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함.

5. 고이자 발생을 위한 노력 경주

96년도 전체 이자수입은 19,776,478천원으로서 95년도 10,494,709천원 보다 92억원이 증가된 이자수입을 올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대 이자비율을 분석하면 94년도 가 0.9%, 95년 1.90%, 96년 3.66%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금리

중 이자가 가장 싼 1%의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금액 평잔 452억원으로, 이에 발생한 이자가 4억 5200만원에 달하고 본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이자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면서 특히 각 실·과 및 구청, 사업소에서 필요없는 (시기 미도래)자금을 과다히 매정받아 방치하는 사례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96.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단위 : 원)

구 분	이 자	비 고
총 계	452,459,869	
일 반 회 계	360,072,346	
본 청	216,938,900	
원 미 구	76,108,765	
소 사 구	39,779,164	
오 정 구	27,245,517	
특 별 회 계	11,061,040	
의 료 보 호	755,760	
새 마을 소 득	564,110	
토 지 구 획	3,381,180	
영 세 먼	1,104,790	
교 통 사 업	795,340	
경 영 수 입	4,459,860	
공기업특별회계	81,326,483	
상 수 도	36,303,857	
공 영 개 반	22,085,696	
하 수 도	22,936,930	

연도별 예산 및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회계명	예산액 (A)	이자수입액 (B)	예산액대비 이자수입율 (B/A)(%)	전년도대비 이자수입율의 증가율(%)	비고
94년	계	569,121,878	5,539,198	0.97	132	
	일반회계	253,536,424	3,094,316	1.22	124	
	특별회계	315,585,454	2,444,882	0.77	142	
95년	계	549,707,301	10,494,709	1.90	195	
	일반회계	302,516,967	7,060,599	2.33	190	
	특별회계	247,190,334	3,434,110	1.38	179	
96년	계	540,317,349	19,776,478	3.66	192	
	일반회계	288,602,325	11,202,916	3.88	166	
	특별회계	251,715,024	8,573,562	3.40	246	

96년도 이자수입 현황

회계별	구분	이자수입액 (천원)	점유율 (%)	비고
합	계	19,776,478	100.0	
일반회계	계	11,202,916	56.6	
기타특별회계	소 계	732,215	3.7	
	의료보호기금	755	0.0	
	새마을소득사업	10,729	0.1	
	토지구획정리	64,593	0.3	
	영세민생활안정	2,228	1.3	
	교통사업	264,460	2.0	
	경영수익사업	389,450	2.0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7,841,347	39.7	
	상수도	5,849,434	29.6	
	공영개발	1,719,716	8.7	
	하수도	272,197	1.4	

6. 부가가치세 신고소홀

○ 개요

각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지불 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증빙으로 지출결의서에 첨부 보관하고 있음

○ 문제점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배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공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발되지 않아 탈세조장의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구청 경리계에서 동사무소 회계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세출결산 결산검사 검토사항

1. 세출결산서 수정사항

가. 소사구 세출결산내용 중 지출원인행위금액 차액

○ 현황

소사구의 예산세목별 세출결산내용 중 지출원인행위 항목의 금액이 전산입력 시 오류로 인하여 지출액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되어 소사구 세출결산총괄표상의 지출원인행위 금액과 상이한 바, 이는 개별항목의 합계와 총괄표상의 합계가 서로 다른 것으로 걱정하게 작성된 총괄표상의 합계금액으로 지출원인행위 항목의 세출예산세목별금액이 차액발생

차 액 내 역

구 분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원인행위액	차 이 금 액
	총괄표 금액	예산세목별금액	
계	27,813,606,740	24,524,642,540	3,288,963,800
일반행정비	14,578,946,670	13,342,747,540	1,236,199,130
사회개발비	8,013,161,560	7,641,566,380	371,595,180
경제개발비	5,119,048,530	3,437,879,040	1,681,169,490
민 방 위 비	102,449,980	102,449,980	

【참고】

예산세목별금액은 오류가 있으나 총괄표상의 금액은 적정하게 작성되어 결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나. 공영개발공기업 세계잉여금 수정

○ 수정사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세입세출결산서 Page 18)의 공영개발공기업 세계잉여금의 내용 중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사고이월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류로 인하여 이중 계상되어 있는 바, 보조금사용잔액에 계상되어 있는 199,022,040원은 삭제되고 동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표시되어야 함.

○ 수정내용

공영개발공기업의 세계잉여금의 내용 중 수정과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고이월금액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수정 전 세계잉여금내용	13,517,914,204	199,022,040	16,508,664,498
수정 후 세계잉여금내용	13,517,914,204	-	16,707,686,538

보조금 사용잔액 199,022,040원은 사고이월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0로 표시되어야 하며 동액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야 함.

○ 수정효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므로 관련 세입세출결산총괄 내용이 수정되어야 함.

다. 원미구 결산내용 중 이월액 수정

○ 수정사유

원미구의 일반행정비의 계속비 이월내역 중 중동 민·관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23,597,780원이 지출원인 행위는 이루어지고 지출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사고이월로 이월되어야 하나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으므로 동액 만큼 계속비가 감액되고 사고이월금액이 증액 수정되어야 함.

○ 수정내용

구 분	사고이월금액	계속비 이월금액	비 고
수정 전 일반행정비	2,860,000	327,949,000	
수정 후 일반행정비	26,457,780	304,351,220	

○ 수정효과

계속사업의 경우 이월금액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의 구분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나 이월항목의 정의대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고이월로, 지출원인행위도 되지 않은 금액은 계속비로 명확히 이월시키야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기내용이 수정된다면 관련 세입세출 총괄내용 중 익년도 이월금액 내에서 사고이월금액과 계속비이월금액이 수정되어야 하나 이월금액 내의 수정이므로 그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 공기업특별회계 개별결산서의 세출결산내용과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총괄내용과의 차이

○ 수정사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독립적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받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상의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임. 즉,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의 수익적지출과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지출 합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임. 이와 같이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순서적으로 작성되어야 세출결산내용이 이해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리라 판단됨.

○ 수정내용

- 별첨자료 참조 -

○ 수정효과

상수도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정은 결국 불용액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수정여부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나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정사항의 내용은 굴포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직할시와 사업비 부담협정을 맺고 부담금을 공사진행에 따라 수령하기로 하였던 바, 세입예산이 확정되고 총 공사 금액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영개발공기업의 개별결산보고서상의 세출결산에서는 지출되지 않은 사고이월금액으로 처리하였으나 본청의 세출결산총괄표 작성 시는 정수결의가 되었어도 자금이 수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임.

정수결의가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해 전체금액으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성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수령될 것이라고 한다며는 실질적인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그 금액은 수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액에서 사고이월금액으로 정리되어 총괄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별첨자료】

수정 전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총괄 중 공기업특별회계(Page19)의 제시 금액이며, 수정 후 금액은 개별공기업 결산서상의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의 수익적지출과 자본예산결산보고서의 자본적지출을 합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위액 (B)	지 출 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 용 액 (A-C-D)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상 수 도 특별회계	수정전	36,577,041,800	25,019,817,531	25,019,817,531	9,523,813,762	3,870,857,120	130,890,442	5,522,066,200	2,033,410,507
	수정후	36,577,041,800	25,077,192,415	25,005,048,865	9,392,923,320	3,870,857,120	-	5,522,066,200	2,179,069,615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정전	142,256,714,460	111,535,214,060	97,934,117,600	31,028,314,194	17,510,399,990	13,517,914,204	-	13,294,282,666
	수정후	142,256,714,460	111,535,214,060	97,934,117,600	31,028,154,250	17,427,057,790	13,601,096,460	-	13,294,442,610
하 수 도 특별회계	수정전	51,309,647,000	23,414,371,520	23,414,371,520	4,107,268,420	950,000,000	3,157,268,420	-	23,788,007,060
	수정후	51,309,647,000	47,861,312,240	23,414,371,520	25,396,940,720	950,000,000	24,446,940,720	-	2,498,334,760
수 정 전 계		230,143,403,260	159,969,403,111	146,368,306,651	44,659,396,376	22,331,257,110	16,806,073,066	5,522,066,200	39,115,700,233
수 정 후 계		230,143,403,260	188,473,718,715	146,353,537,985	65,818,018,290	22,247,914,910	38,048,037,180	5,522,066,200	17,971,846,985

3. 불용예산의 타당성 검토

□ 예산항목별 불용비율

본청 및 각 구청의 예산의 장 항목별로 예산대비 불용액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표

구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대비 불용비율 (%)	불용총액 대비율 (%)
본 청	일반행정	64,219,960,820	3,596,549,065	5.6	9.2
	사회개발	138,632,924,600	13,723,172,780	9.9	35.3
	경제개발	71,968,700,120	8,836,940,940	12.3	22.7
	민방위비	667,562,000	57,571,080	8.6	0.1
	지원및기타경비	7,314,901,000	1,838,871,640	25.1	4.7
	계	282,804,048,540	28,053,105,505	9.9	72.1
원미구	일반행정	18,889,913,480	1,836,721,040	9.7	4.7
	사회개발	11,391,171,000	704,531,870	6.2	1.8
	경제개발	9,062,809,350	1,206,192,250	13.3	3.1
	민방위비	161,858,000	53,119,110	32.8	0.1
	지원및기타경비	-	-	0.0	0.0
	계	39,505,751,830	3,800,564,270	9.6	9.8
소사구	일반행정	18,967,914,270	1,143,109,600	6.0	2.9
	사회개발	8,790,712,930	777,551,370	8.8	2.0
	경제개발	5,895,642,710	776,594,180	13.3	2.0
	민방위비	155,150,000	52,700,020	34.0	0.1
	지원및기타경비	-	-	0.0	0.0
	계	33,809,418,910	2,749,955,170	8.1	7.1
오정구	일반행정	16,924,747,360	924,213,320	5.5	2.4
	사회개발	6,271,774,210	461,730,800	7.4	1.2
	경제개발	5,423,116,150	2,897,735,730	53.4	7.4
	민방위비	102,405,000	27,050,490	26.4	0.1
	지원및기타경비	-	-	0.0	0.0
	계	28,722,042,720	4,310,730,340	15.0	11.1
부천시 전 체	일반행정	119,002,535,930	7,500,593,025	6.3	19.3
	사회개발	165,086,582,740	15,666,986,820	9.5	40.3
	경제개발	92,350,268,330	13,717,463,100	14.9	35.3
	민방위비	1,086,975,000	190,440,700	17.5	0.5
	지원및기타경비	7,314,901,000	1,838,871,640	25.1	4.7
	총 계	384,841,263,000	38,914,355,285	10.1	100.0

□ 개괄적 검토

○ 부천시의 전체 불용액은 예산성립의 10%선인 389억원으로 예산대비 불용액의 비율을 검토하여 보면 일반행정의 불용비율은 6.3%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항목의 25.1%와 민방위비의 17.5%의 불용비율은 이 평균적인 불용비율 10.1%에 비해 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경우 재난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세운 예산 18억원이 용도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불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민방위비의 경우에도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미사용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회개발 항목의 경우 불용비율은 9.5%이고 불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3%인 156억여원에 달하며, 경제개발의 경우에도 불용비율 14.9%와 불용총액에서의 비율은 35.3%인 137억여원으로 그 금액이 크고 불용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치이므로 불용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본청의 사회개발의 관항목인 교육 및 문화 항목의 예산 불용액은 71억여원으로 불용비율이 16.5%이며, 경제개발의 관항목인 농수산개발 예산 불용액은 14억여원으로 불용비율은 26.2%이고 같은 경제개발의 관항목인 교통관리의 예산불용액은 33억여원으로 불용비율은 30.2%이다 이중 교통관리 항목의 세부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구분	예산액	불용액	불용비율	불 용 사 유
교통행정 관 리	84억	20.3억	24.2%	중동역환승주차장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예산설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사업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른 예산불용액 19억여원
교통안전	28억	13.5억	48.2%	교통체계개선사업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보도 축소하고 도로확장하여 버스 전용차선을 계획하였으나, 북부역지하차도 계획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13.4억여원

교통행정관리의 예산불용은 예산편성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집행 시 토지소유자의 심경이 변화하여 토지매도를 거부함에 따른 사업불능

으로 그 불용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교통 안전항목의 예산불용은 전체 도시 교통기본계획의 면밀한 성찰없이 중복된 계획으로 인한 예산불용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도시 전체적인 도로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불용이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음. 또한, 추경 예산편성 전에 이미 예산이 불용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용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회계년도 말에 불용으로 처리하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편성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개선사항

-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계기간 종료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로 사업예산의 항목별로 일정금액 이상(예를 들면 5억원이나 10억원)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의 예산편성 내용과 대비되는 예산불용조서를 시의회(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 불용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반기 불용예산액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예산에 대한 예산감액을 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하며,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기에 불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대해 검토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사고이월사업 집행에 부적절

○ 현행

96년도 예산에 계산되어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여 시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사 착공도 하지 않은 채 97년도로 사고이월 시키고서는 96년도 예산서에 명기된 부기내역과 상이하 게 그 사업장소를 변경하여 97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이는 위치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부적이라도 부기변경 절차를 취하든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것이 옳은 행정 절차라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은 행정질서를 문란시킨 사례로 판단됨.

○ 개선사항

사고이월이 필요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규칙 등에 의거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밟은 후 이월 집행토록 하기 바람.

5. 예비비 지출의 효율화

- 예비비의 사용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발생에 따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고 그 중 0.5% 이상은 자연 및 재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96년도 예비비 예산액 18억 중 11억을 지출 결정하여 9억원을 벌침과 같이 사용하고 2억4000만 용액을 발생시켰음.
-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경비라고 볼 때 청사 개보수,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 공무원의 96. 사업예산 편성시 방관자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비비의 성격상 공무원의 행정예측 결여로 인한 지출 행위로서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편의적인 지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관	항	세 항	세 세 항	목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신규) 사업	연구개발비	도로대장전산화용역	695,400,000	604,000,000	181,200,000	422,800,000	91,400,00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고강로개설공사	1,035,775,500	893,663,840	620,752,600	272,911,240	142,111,66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범박로개설공사	55,500,000	53,189,490	0	53,189,490	2,310,51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중앙로대성병원앞 보도육교설치공사	300,000,000	269,095,120	126,088,810	143,006,310	30,904,88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부일로북부역사거리 보도육교설치공사	859,000,000	781,129,840	374,986,010	406,143,830	77,870,16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경인로부흥주유소 입구 보도육교설치	350,000,000	265,436,000	1,509,830	263,926,370	84,563,80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경인로자유시장입구 보도육교설치공사	350,000,000	249,742,240	119,636,840	130,105,400	100,257,76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기본조사 설계비)	부천I·C업체화에 따른 타당성조사및 기본조사설계용역	135,000,000	118,127,180	59,000,000	59,127,180	16,872,82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온수고가교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34,000	235,000,000	117,500,000	117,500,000	15,034,000	절대공기부족으로 96년 내 집행불가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석촌로개설공사	600,000,000	502,735,000	132,638,270	370,096,730	97,265,000	지상물 보상협의지연에 따라 96년 내 집행불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4,453,014,960		2,817,368,000	2,817,368,000	60,000,000	1,575,646,960		
			시설비등 (시설부대비)	3,780,000		0	0	3,780,000	0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신규) 사업	시설비등 (시설비)	문예로개설공사	99,000,000	63,882,620	0	63,882,620	35,117,380	용지보상협의회지연에 따라 96년 내 집행불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161,600,000		26,607,410	0	134,992,590	0		
			시설비등 (시설부대비)	891,000		0	0	891,000	0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체(신규) 사업	자산취득비	진공청소기차량구입	130,000,000	130,000,000	101,918,120	8,066,810	20,015,070	스위스외자구매에 따른 선적지연으로 관세미지 급이월집행

6. 봉급지급 제도의 개선

□ 현황

현재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봉급지급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시 본청

- 각 실·과에서 계산하여 회계과로 통보
- 회계과에서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 구청

-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계산하여 지급

○ 동사무소 및 사업소

- 본청 및 구청에서 자금을 받아 동 및 사업소별로 계산하여 개인별 계좌에 입금

□ 문제점

○ 인력의 낭비

- 본청에 24개과, 11개 사업소와 3개 구청 및 34개 동에 봉급 담당직원(전담직원은 아님)이 있고,
- 시 본청 및 각 구청 총무과에는 봉급담당, 연금담당, 의료보험담당 등 3명의 직원이 각각 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막대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

○ 행정력의 낭비

- 시청 2개 과 등 72개 부서에 봉급관계 장부와 공제액 등에 관한 서류를 비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 자금관리소홀

- 공무원의 보수에는 3개 예산과목(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에 23개의 부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 이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월평균 643,552천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연간 8%의 이자로 징기예금을 할 경우 약 52,000천원에 이자가 발생됨

□ 개선방안

- 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을 인사관리에 편성, 총무과에서 일괄계산하여 회계부서로 넘겨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타당함.

- 방법으로는 컴퓨터에 전체 자료를 입력 후 인사변동 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

□ 기대효과

- 인력 면에서 구청에 관계공무원 각 3명을 타 업무에 전용
- 행정의 간소화와 자금관리에 효율성 제고

인 건 비 지 급 내 역

【본청】

(단위 : 천원)

	목 별	자금배정액	지 급 액	잔 액	월평균잔액
계	기 본 급 (봉급, 기말, 정근수당)	11,450,465	11,216,825	233,917	580,624
본 청		5,330,329	5,231,380	98,948	464,021
사업소		6,120,136	5,985,445	134,969	116,603
계	수 당 (가족, 학비, 대우, 장기근	2,308,803	2,184,800	123,998	198,299
본 청	속가산금, 운전수당, 민원,	879,379	878,864	514	94,926
사업소	기타수당, 위험근무, 방법 수당, 방법야간, 기술수당)	1,429,424	1,305,936	123,484	103,373
계	복리후생비	4,184,318	3,959,324	224,935	379,312
본 청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 교통비, 직급보	2,209,895	1,933,748	96,146	263,845
사업소	조비, 급식비)	2,154,423	2,025,576	128,789	115,467

【원미구】

(단위 : 천원)

	목 별	자금배정액	지 급 액	잔 액	월평균잔액
	기 본 급 (봉급, 기말, 정근수당)	3,011,189	3,010,737	451	55,398
	수 당 (가족, 학비, 대우, 장기근속가 산금, 운전수당, 민원, 기타수 당, 위험근무, 방법수당, 방법 야간, 기술수당)	390,803	390,227	575	12,359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명 절휴가, 교통비, 직급보조비, 급식비)	1,113,786	1,112,042	1,743	69,136

【소사구】

(단위 : 천원)

목 별	자금배정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총 계	월평균	총 계	월평균	총 계	월평균	
총 계	7,378,148	614,846	7,365,247	613,770	12,901	1,076	
소사구청	4,372,683	364,390	4,372,661	364,388	22	2	
동 계	3,005,465	250,456	2,992,586	249,382	12,879	1,074	
심곡본1동	334,254	27,855	333,821	27,818	433	37	
심곡본동	320,068	26,672	316,848	26,404	3,220	268	
소사본1동	287,548	23,962	287,089	23,924	459	38	
소사본2동	297,797	24,816	296,749	24,729	1,048	87	
소사본3동	304,379	25,365	304,360	25,363	19	2	
범 박 동	272,775	22,731	271,904	22,659	871	73	
피 안 동	313,440	26,120	308,687	25,724	4,753	396	
역 곡 3 동	336,870	28,073	336,745	28,062	125	10	
송 내 1 동	275,059	22,922	273,200	22,767	1,859	155	
송 내 2 동	263,275	21,940	263,183	21,932	92	8	

【오정구】

(단위 : 천원)

목 별	자금배정액	월평균잔액	집 행 액	월평균잔액	잔 액	월평균잔액	비 고
총 계	6,014,152	501,175	5,936,692	494,721	77,460	6,454	
구 청	3,908,830	325,735	3,865,060	322,088	43,770	3,647	
동 계	2,105,322	175,440	2,071,632	172,633	33,690	2,807	
성 곡 동	343,509	28,625	338,501	28,208	5,008	417	
원 중 1 동	259,411	21,617	258,243	21,520	1,168	97	
원 중 2 동	282,295	23,524	278,537	23,211	3,758	313	
고강본동	321,170	26,764	320,298	26,691	872	73	
고 강 1 동	271,442	22,620	268,009	22,334	3,433	286	
오 정 동	311,140	25,928	293,289	24,440	17,851	1,488	
신 흥 동	316,355	26,362	314,755	26,229	1,600	133	

7. 기금관리운영 검토사항

○ 현행

부천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자립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5종의 기금이 있으나, 이 중에서 95년도에 설립되어 이제 겨우 기금조성중(출연금)인 것이 2종이 있고, 그나마 3종의 기금운영도 80만 시민의 복지운영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기금들이 96년도 지급액을 보면 167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얼마 안 되는 기금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일관성 부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문제점

시민의 복지향상과 정서함양 및 건강한 21세기 부천시민의 위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기금액의 부족으로 노인복지, 영세민 생활안정, 체육문화발전 및 우수한 인력의 발굴육성 등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

8. 장학기금 관리운영 효율화

○ 현행

자립장학기금의 경우 96년도 지급액이 163명에 46,930,000원이고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은 1,559명에 777,103,000원으로 중복지급의 여지가 있으며, 지급조례 및 규칙이 다섯 가지나 되고 있음. 또한 장학금 지급규정이 저소득층, 영세민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인재 양성 장학금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됨

○ 문제점

부천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부천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자립장학기금의 증액 조성은 물론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 위주의 지급조례, 규정 등은 제한된 시민에 편중되어 진정한 부천의 꿈나무를 키우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 자립기금 및 장학금지급이 다섯 가지로서 각 과에서 개별법 및 조례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을 통폐합 관리 운영하고 일반회계 장학금(저소득, 영세민 등 지원)과 장학기금 장학제도를 각각 통폐합 관리함으로써 중복지급 소지를 일소하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특징계층 및 장학생 선발의 혼란방지
- 자립장학기금의 경우 수원, 성남 등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이의 획기적인 출연금 등의

기금조성으로 진정한 부천시에 우수한 학생에게 실질 지급되게 함으로서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는 기금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일반회계 장학금이 저소득층 영세민위주의 지급대상이라면 장학기금은 21세기 부천시를 이끌어갈 진정한 영재,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진정한 미래의 부천시에 발전을 추구하는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천시의 선진 시민상 기대

○ 기금조성 및 효과

상기 장학기금의 확충 조성과 아울러 노인 복지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확충도 병행 실시되어야 하며,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이 소일 할 수 있는 기금의 지급으로 수익 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개발 신장으로 진정한 노인복지 영세민생활안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

9. 채권현황 검토사항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544,344,150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액 중 소사동사무소 임차료 65,010,000원만 미회수하고 있어 이의 회수대책이 요구되며, 주택사업, 세마을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채권 중 이행기간 도래액에 대하여는 미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정수할 것이며, 각종 보유채권의 자금을 고이율 은행상품에 가입 활용하여 부천시 영세 저소득층에 확대지급함으로써 채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0. 채무현황 검토사항

부천시 96년 결산에 의한 채무는 총 137,952백만원으로서 그중 원금이 119,414백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18,538백만원임.

이 중 공영개발의 채무가 74%인 103,417백이며, 특히 본 공영개발에 채무이자가 타 채무보다 이자율이 8%~9%로 타 항목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환계획에 상관없이 조기 상환되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천시청 청사와 소사구청 청사를 건립키 위하여 이룩된 채무행위가 아직도 23,936백만원이나, 이는 연간 3%의 저리로 장기간 상환할 사항이라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무관한 것이나 현재 부천시에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오정구청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됨.

채무현황총괄

○ 채무현재액 현황

(96.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비고
137,952,740	28,551,045	157,462	109,244,233	

○ 채무현재액 자금별현황

(96.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계	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재정경제원 (채특자금)	농협중앙회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
계	137,952,740	3,720,500	55,412,200	3,904,093	74,758,485	157,462
일반회계	28,551,045	3,720,500		894,290	23,936,255	
기타특별회계	157,462					157,462
공기업특별회계	109,244,233		55,412,200	3,009,803	50,822,230	

○ 채무현재액 상환지원별 현황

(96.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공기업수입금	실소유자부담	비고
계	137,952,740	28,551,045	109,244,233	157,462	
일반회계	28,551,045	28,551,045			
기타특별회계	157,462			157,462	
공기업특별회계	109,244,233		109,244,233		

○ 채무현재액 사업별 현황

(96.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계	주거환경개선	청사정비	주택건설	택지조성	상수도사업
계	137,952,740	894,290	27,656,755	157,462	103,417,431	5,826,802
일반회계	28,551,045	894,200	27,656,755			
기타특별회계	157,462			157,462		
공기업특별회계	109,244,233				103,417,431	5,826,802

일반회계채무잔액조서

(단위 : 천원)

목 적	채 무 액			차 입 선	상환조건	이 율	상 환 내 역			잔 액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34,577,639	24,733,000	9,844,639				6,026,574	1,610,400	4,416,194	28,551,045	23,122,600	5,428,445
• 89.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673,949	413,000	260,949	채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0년균분	6%	262,610	83,400	179,210	411,339	329,600	81,739
• 90.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675,151	420,000	255,151	채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0년균분	6%	192,200	42,000	150,200	482,951	378,000	104,951
• 92.시청사·의회청사 신축	9,279,951	6,500,000	2,779,951	농 협 중 앙 회 원 미 동 지 점	2년거치 5년균분	9%	3,029,977	1,300,000	1,729,997	6,249,954	5,200,000	1,049,954
• 94.시청사·의회청사 신축	349,500	300,000	49,5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39,000	30,000	9,000	310,500	270,000	40,500
• 94.소사구청사 신축	262,125	225,000	37,1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29,250	22,500	6,750	232,875	202,500	30,375
• 94.원종2동사무소청사 신축	116,500	100,000	16,5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13,000	10,000	3,000	103,500	90,000	13,500
• 94.시청사·의회청사 건립	12,846,945	9,000,000	3,846,945	농 협 중 앙 회 원 미 동 지 점	2년거치 5년균분	9%	1,622,959	0	1,622,959	11,223,986	9,000,000	2,223,986
• 94.소사구청사 건립	7,140,643	5,000,000	2,140,643	농 협 중 앙 회 원 미 동 지 점	2년거치 5년균분	9%	678,328	0	678,328	6,462,315	5,000,000	1,462,315
• 96.소사구청사 신축	873,750	750,000	123,75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0	0	0	873,750	750,000	123,750
• 96.시청사·의회청사 건립	932,000	800,000	132,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0	0	0	932,000	800,000	132,000
• 96.시청사·의회청사 건립	815,500	700,000	115,5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91,000	70,000	21,000	724,500	630,000	94,500
• 96.소사구청사 건립	611,625	525,000	86,6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 사 정 비 기 금)	2년거치 10년균분	3%	68,250	52,500	15,750	543,375	472,500	70,875

공기업특별회계채무잔액조서

(단위 : 천원)

목 적	채 무 액			차 입 선	상환조건	이 율	상 환 내 역			잔 액		
	계	원 금	이자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153,198,056	112,971,000	40,227,056				43,953,823	16,779,064	27,174,233	109,244,233	96,191,936	13,052,307
• 79.송배수관 확장공사	212,269	100,000	112,269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198,024	86,680	111,344	14,245	13,320	925
• 80.송배수관 포설	212,573	100,000	112,573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182,772	73,344	109,428	29,801	26,656	3,145
• 81.여월정수장 시설	205,954	100,000	105,954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167,922	66,880	101,122	38,032	33,200	4,832
• 82.여월정수장 시설	1,107,417	500,000	607,417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892,669	315,080	577,589	214,748	184,920	29,828
• 83.송배수관 시설공사	982,701	500,000	482,701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702,680	266,760	435,920	280,021	233,240	46,781
• 84.배수관 부설	265,292	135,000	130,292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176,869	63,000	113,869	88,423	72,000	16,433
• 85.소사배수지 시설	1,498,347	800,000	698,347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896,342	320,120	576,222	602,005	479,880	122,125
• 87.한강계통 상수도확장	1,248,443	700,000	548,443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576,027	186,960	389,067	672,416	513,040	159,376
• 87.광역상수도3단계 확장공사	1,830,838	1,200,000	630,838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2년거치 8년균분	8.0%	1,668,838	1,050,000	618,838	162,000	15,000	12,000
• 88.수도권3단계 및 한강2단계 확장	2,292,164	1,500,000	792,164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2년거치 8년균분	8.0%	1,872,164	1,125,000	747,164	420,000	375,000	45,000
• 88.한강계통 상수도 확장공사	1,738,238	1,000,000	738,238	재 무 부 (재 특 자 금)	5년거치 15년균분	5.5%	668,127	200,320	467,807	1,070,111	799,680	270,431
• 89.배수관 부설공사	1,530,959	1,000,000	530,959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2년거치 8년균분	8.0%	1,095,959	625,000	470,959	435,000	375,000	60,000

공기업특별회계채무잔액조서

(단위 : 천원)

목 적	채 무 액			차 입 선	상환조건	이 율	상 환 내 역			잔 액		
	계	원 금	이자				계	원 금	이자	계	원 금	이자
· 90.통합정수장 시설공사	4,527,123	3,000,000	1,527,123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2년거치 8년균분	8%	2,727,123	1,500,000	1,227,123	1,800,000	1,500,000	300,000
· 90.중동택지개발사업	5,866,521	4,000,000	1,866,521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3년거치 5년균분	8%	4,074,521	2,400,000	1,674,521	1,792,000	1,600,000	192,000
· 93.중동택지개발사업	46,027,442	35,000,000	11,027,442	농 협 중 앙 회	3년거치 일시상환	9%	17,142,443	8,500,000	8,642,443	28,884,999	26,500,000	2,384,999
· 94.중동택지개발사업	51,955,118	37,336,000	14,619,118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3년거치 2년균분	8%	7,151,918	-	7,151,918	44,803,200	37,336,000	7,467,200
· 94.중동택지개발사업	6,906,302	5,000,000	1,906,302	경 기 도 (지 역 개 발 기 금)	3년거치 2년균분	8%	906,302	-	906,302	6,000,000	5,000,000	1,000,000
· 95.중동택지개발사업	24,790,355	21,000,000	3,790,355	농 협 중 앙 회	2년거치 일시상환	9%	2,853,123	-	2,853,123	21,937,232	21,000,000	937,232

11.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검토사항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033,643,608천원으로 그 중 토지, 건물이 대부분이며, 유가증권 및 용역물권(전세권)75억원은 기간미도래로 채권성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현재액은 8,341,990천원으로 대부분 업무용 각종 장비로서 분청 및 각 사업소, 구별로 관리 운용하고 있음. 우리 시에 물품정수가 없는 물품 중 환경위생분야의 먼지공해 측정기 등 시민위생복지에 관련되는 물품 등은 조속확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12. 전년도 결산검사결과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 자금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한 이자소득증대에 대하여 벌침과 같이 보통예금(1%)관리자금이 96.8월 현재 월평균 100억원이던 것이 작년도 결산검사 이후 97.6월 현재 8억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96년 이자소득을 90억원 이상 신장시키는 큰 성과가 있었음은 관계 부서의 노력이라 치하하며 그러나 아직도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의 일상경비 등이 월평균 80억원 정도가 1%보통예금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 자금도 최소한 줄어 고금리 부가각치 상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며,
-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근원이 되는 세입분야에 있어 아직도 세입 전문인력인 세무직공무원의 부족과 전산화운영에 따른 전산인력충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천시 세수증대 및 세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